

■ 최신 법령 ■

[헌법·행정]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복합개발 촉진

정원 변호사 | 박호경 변호사

1. 정부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여,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 비율을 완화하고,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유턴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용이하게 하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.
2.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·문화·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로서, 인천 IHP단지, 춘천 NHN단지, 부산 희동·석대단지 등 11곳 112만2,000㎡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.
3.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을 50%에서 40%로 완화함으로써, 기타 업무 및 주거 편의를 위한 지원시설용지의 비율을 늘려 복합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(제7조 제3항). 또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려고 개발하는 경우,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(기존 유상공급면적의 3% 내)을 폐지하여 탄력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(제19조 제2항 제1호).
4. 또한 국외 운영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입주우선권을 부여하고,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(제42조의 3 제3항 제9호).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도 확대하여, 에너지공급설비, 신재생 에너지설비, 대학시설 등도 입주가 가능 시설에 포함시켰습니다(제1조의 2).
5. 다운로드 :
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(대통령령 제24190호, 2012. 11. 20. 시행)